

울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4나107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4나1075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소70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개명 전 성명 C)

변론종결 2024. 7. 18.

판결선고 2024. 8. 8.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소7082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7,6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분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여 2024. 1.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인 2024. 2. 8.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 선고 및 판결문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4,877,671원의 반환 청구 및 전자키 개문비용 350,000원의 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하고 전자키 개문비용 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전자키 개문비용 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패소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부 D은 울산 남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21. 4. 24. 사망하였고, D의 부모와 피고를 포함한 두 딸 등은 2021. 7. 7. D으로부터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0. 개시된 이 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2023. 3. 14.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23. 4. 14.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모 H과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조건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H은 2023. 6. 24. ‘압류가 해결되어야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수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H 및 이 사건 부동산에 2023. 2. 14. 세대주로 전입신고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받아놓은 이 법원 I 부동산인도명령에 근거하여, 2023. 7. 5. 이 법원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강제 개문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부동산인도집행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집행관은 H과 피고를 만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가 공실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다.

(5) 위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인도집행에도 피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계속 등록되어 있다가 2023. 11. 1. 거주불명자로 직권 등록되었고 2023. 11. 27. 울산 울주군 J건물, K호로 H의 자녀로 전입신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3. 4.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집행을 한 2023. 7. 5.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인 4,877,671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2.부터 2023.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언양에 따로 나와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자신의 물건도 있지 않았고 D이 사망한 이후 사이가 나빠진 H과 연락한 바도 없다고 다룬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3. 4.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집행을 한 2023. 7. 5.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되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되는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H이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집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는 공실 상태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수개월간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자로 직권 등록될 정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큰 신경을 써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전입신고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점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 즉 같은 기간 동안 피고 앞으로 다른 주소에 관한 도시가스가 과금되었던 내역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박성규, 판사 설정은